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39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교육생을 뿌리산업 외국인 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라 함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뿌리기업”이라 함은「법」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4.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국내 양성대학”(이하 “국내 양성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산업

통상부장관이 선정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4의2.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국외 양성대학”(이하 “국외 양성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해외 교육기관을 말한다.

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의2의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유학생”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의 D-2(유학)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6의2. “외국인교육생”이라 함은 국외 양성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을 말한다.

6의3. “외국인 기능인력”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의2의 E-7(특정 활동)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7. “사증발급안내매뉴얼,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법무부 매뉴얼“이라 한다) 이라 함은 법무부의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침을 말한다.

8. “체류자격 변경”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E-7(특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량검증”이라 함은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교육생이 외국인 기능인력으

로 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8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량검증신청자”라 함은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교육생 중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량검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1. “기량검증통과자”라 함은 기량검증신청자 중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12. “기량검증확인서”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자가 기량검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13. 삭제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삭제

제3장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제12조(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①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 국내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2. 국내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2의 D-10(구직)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자

② 그 밖에 기량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 ①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
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국내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류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학년 평균평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0점 이상)

2.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여부

3. 외국인유학생의 사증 유효 여부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면접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지식

2.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취업 예정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실습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실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실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성

2. 해당분야 기능의 숙련도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향후 뿌리기업에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면접 · 실습평가 장소)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와 실습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및 기량검증통과자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제20조(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량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전형료의 납부) ①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 ①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량검증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유학생은 해당 기량검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량검증통과의 취소)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기량검증의 통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의 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기량검증을 활용한 체류자격 변경의 지원)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
2. 기량검증, 기량검증 신청 관련 서류작성 등에 관한 상담 및 안내
3. 뿌리기술 관련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의 구축
4. 그 밖에 뿌리산업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국내 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

제26조(국내 양성대학의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정한다.

제27조(국내 양성대학 신청서제출) ① 신청 대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양성대학 선정의 필요성
2. 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 모집, 관리 및 졸업생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보유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재학 및 졸업 유학생 현황 등
5.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국내 양성대학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8조(국내 양성대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내 양성대학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국내 양성대학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외국인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양성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 양성대학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우수성
2. 외국인유학생 모집 및 관리 등을 위한 국내 양성대학 내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확보 및 계획
3.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연계성 구비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국내 양성대학 선정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내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내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신청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국내 양성대학 협약) 관리기관의 장은 국내 양성대학을 선정한 경우 선정된 대학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제32조(국내 양성대학의 연차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내 양성대학에 대

해 제31조에 따른 사항 등을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한다.

제33조(국내 양성대학의 연차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내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내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국내 양성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국내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32조에 따라 연차평가를 받은 국내 양성대학은 평가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35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하되,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연차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36조(국내 양성대학의 선정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국내 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2. 국내 양성대학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외국인유학생 모집 시 부적절한 외부기관의 개입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국내 양성대학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 ① 국내 양성대학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 및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현황
2. 외국인유학생 교육, 취업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국내 양성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국내 양성대학의 지원) 정부는 국내 양성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유학생의 모집 및 관리
2.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확충
3.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
4.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장 외국인 기능인력의 도입

제38조의2(국외 양성대학 지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의 기능인력 양성 및 유입 촉진을 위하여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국외 양성대학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뿌리기술 관련 국제

개발협력 사업으로 외국인교육생의 뿌리기술 교육 등 국외 양성대학의 학사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외국인교육생 기량검증 및 취업지원) ① 국내 뿌리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국외 양성대학의 외국인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교육생 기량검증 신청서
2. 해당 국가의 여권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국외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 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3장을 준용하여 외국인교육생의 기량검증을 실시하고, 기량검증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량검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교육생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의 채용 정보 제공 및 취업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4(외국인 기능인력 고용추천)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외 양성대학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뿌리기업으로 취업이 결정된 외국인교육생 중 법무부 매뉴얼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고용추천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9조 삭제

제40조(뿌리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체계

적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뿌리산업 외국인력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적용범위) 뿌리산업 외국인 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외국인교육생을 양성·활용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2조(업무의 위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본 지침에 따른 제반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별지 제5호서식] <삭 제>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별지 제7호서식] <삭 제>

[별지 제8호 서식]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

신청인 정보	신청인 성명[1]		외국인등록번호		사 진 (3×4)
	신청인 휴대전화 및 이메일	(휴대전화) (이메일)	뿌리기술 분야[2]		

양성대학정보	양성대학[3]명		양성대학[3] 소재지	
	총괄책임자[4] 성명		총괄책임자[4] 이메일	
	총괄책임자[4]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실무담당자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이메일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위 신청인의 기량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9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인등록증 사본	없 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이 위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평가대상자 통보	→ 기량검증 평가	→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신청인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1) 신청인 성명은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으로 작성

2) 뿌리기술 분야는 6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중 1개만 기재하되, 양성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로 정함

3) '양성대학'이라 함은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지정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정함

4) 총괄책임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의 협약서에 기재된 총괄책임자로 정함

[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유학생 학교장 추천서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상 영문):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3. 소속 대학:

4. 소속 대학 소재지:

5. 뿌리기술 분야:

위 외국인은 ○○ 뿌리기술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기량검증평가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총장 ○○○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D-2→E-7)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일부 일뿐,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약서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상 영문):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3. 소속 대학:

상기 신청인은 기량검증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량검증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D-2→E-7)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일부 일뿐,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확인서

1. 확인번호: 제　　호
   (유효기간: 20○○년 ○○월 ○○일까지)

2. 성명(외국인등록번호):

3. 소속대학명:

4. 소속대학 총장:

5. 소속대학 소재지:

6. 뿌리기술 분야: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위 외국인유학생은 ○○ 뿌리기술 분야 ○○직무에 대해 숙련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외국인교육생 기량검증 신청서

신청인 정보	신청인 성명		여권번호		사 진 (3×4)
	신청인 휴대전화 및 이메일	(휴대전화) (이메일)			
양성대학 정보	양성대학명		총괄책임자 성명		
	양성대학[2] 소재지				
	실무담당자 성명				
	실무담당자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이메일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8조의3에 따라 위 신청인의 기량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1. 여권 사본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이 위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평가대상자 통보	기량검증 평가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신청인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1) 신청인 성명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으로 작성

2) '양성대학'이라 함은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지정한 양성대학으로 정함

3) 총괄책임자는 양성대학 협약서에 기재된 총괄책임자로 정함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인교육생 기량검증확인서

1. 확인번호: 제　　호
   (유효기간: 20○○년 ○○월 ○○일까지)

2. 성명(여권번호):

3. 소속대학명:

4. 소속대학 총장:

5. 소속대학 소재지: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8조의3에 따라 위 외국인교육생은 뿌리기술 분야의 직무에 대해 숙련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직인